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이병운 의원 외 34명

나. 의안번호 : 제450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2. 2.

라. 회부일자 : 2023. 2. 9.

2. 제안사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 (안 제3조제3항)

나.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의 것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(안 제3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3. 2. 14. ~ 2. 19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동의

-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2(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)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취지와 내용에 동의함

1) 교통정책과-2479호(2023.2.14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상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(안 제3조제3항)

- 안 제3조제3항²⁾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로인 자전거도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

2) 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 제5조(사업추진 등)

-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.

- 또한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서 시장은 “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

■ 조례의 적용범위 관련(안 제3조의2)

- 안 제3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적용하고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임
-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「도로교통법」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상충을 방지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

※ 부족액 부담주체

| 의 안 명 | 제안일자 | 심사진행상태 |
|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·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 | 2022.11.11 | 소관위접수 |
|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 | 2020.11.13 | 소관위심사 |
|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22인) | 2020.09.17 | 소관위심사 |